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2가단577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16.부터 2020. 5. 12.까지 시가 합계 205,526,000원 상당의 송어사료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9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08,526,000원(= 205,526,000원 -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송어 치어 양식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송어사료를 먹이로 준 이후 피고가 양식하던 송어 치어 중 50%가 폐사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사료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설령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폐사한 송어 대금 합계 45,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송어사료가 원인이 되어 피고의 송어 치어가 폐사하였거나, 원고가 사료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양식한 송어를 타에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송어 매매대금 41,86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구매자들도 송어의 상품가치를 문제삼으면서 송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 ·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송어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에게 송어사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송어 매매대금 41,862,500원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20. 5. 28.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28.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예금거래내역상 위 금원의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주)D”인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20,000,000원을 “(주)D”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기웅